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458
----------	-------

발의연월일 : 2025. 7. 14.

발의자 : 이수진 · 김문수 · 백혜련  
김윤 · 송재봉 · 남인순  
서미화 · 김현정 · 최혁진  
조계원 · 허영 · 김원이  
백승아 · 김선민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2항제2호나목 중 “이 절 및 제10절의4”를 “이 절, 제10절의4 및 제126조의2”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호”를 “제6호의2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을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 부양자녀에 따른 금액(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50만원, 2명인 경우에는 1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더한 금액을”로 한다.

- 6의2.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100분의 10
  - 나.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100분의 20

다.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  
× 100분의 25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  
의2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  
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생 략)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 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생 략)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 (이하 <u>이 절 및 제10절의4</u> 에서 “부양자녀”라 한다) 가 있는 사람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u>이 절, 제10절의4 및 제126조의2</u> ----- --
3. (생 략) ③ ~ ⑦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 -----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1. ~ 6. (생략)

### 〈신 설〉

제6

호의2 및 제7호-----

-----

-----

-----

-----

----- . -----

-----

-----

-----

-----

----- .

## 1. 8. (한국 韓國)

卷之三

1. Introduction and Plan

---

나은 곳으로 나은 그대 - 연극

---

한국어판 :: 100부 :: 10

1] 북한과 중국 2001 견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한계와 × 100분의 20

다 브약자(3면) 3면 이상의

	<u>연간합계액 × 100분의 25</u>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u>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u> 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⑩ -----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에 부양자녀에 따른 금액(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50만원, 2명인 경우에는 1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을 더한 금액을-----.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